성주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04. 3 .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제안이유

수도법 제32조 및 제38의2 제2항에 의거 간이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을 급수인구 및 1일 급수량을 기준으로 분리 관리토록 규정되어 있어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관리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총 칙

- 관리주체 : 간이상수도는 군수를 소규모급수시설의 경우 당해지역의 사용자 대표를 관리자로 함.
- 군수는 매 5년마다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정비 계획수립

○ 시설의 관리 및 보수

- 수질검사결과 부적합 시설에 대하여는 연속 3회이상 수질검사 실시, 수기준 초과 시설에 대하여는 즉시 개선토록 조치
- 간이급수시설을 분기 1회이상 정기점검 실시 및 필요시 수시점검 실시
- 군수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규모급수시설의 개.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간이급수시설의 관리업무 종사자에 대하여 건강진단 실시

○ 관리비용

- 군수는 간이상수도 사용자로부터 수도요금을 징수 할 수 있다.
-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간이급수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간이급수시설 사용자가 분담. 다만 예산의 범위내에서 군수가 소요비용의 일부 지원 가능

o 사용자 대표 협의회

- 급수시설의 청결유지, 관리비용 분담등 편의도모를 위하여 대표협의회구성 운영

o 보 칙

- 군수는 간이상수도 협의회 대표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군수는 대표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정기검사에 병행 실시 가능
- 군수는 간이상수도 유지 및 운영관리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련자료 : 수도법 제32조 및 제38의2 제2항

나. 입법예고

- 예고기간 : 2004. 2. 11 ~ 3. 1 (20일간)
- 예고방법 : 성주군공보, 군청 및 읍.면게시판 게시, 군홈페이지 게재
- 예고결과 : 의견없음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2조제2항 및 제3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이하 "간이급수시설" 이라 한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간이상수도"라 함은 수도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를 말한다.
2. "소규모급수시설"이라 함은 수도법 제3조 제13의2호의 규정에 의한 급수시설을 말한다.
3. "관리자"라 함은 간이상수도의 경우 군수를, 소규모급수시설의 경우 당해 지역의 사용자대표협의회의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말한다.
4. "사용자"라 함은 간이급수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
5. "사용자대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함은 간이급수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정비계획의 수립) ①군수는 간이급수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군수가 제1항에 의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지방상수도 중·장기개발계획 및 수도 정비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과 연계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제 2 장 시설의 관리 및 보수

제4조(시설의 관리) ①관리자는 시설물의 설치, 운전, 개·보수, 소독 등 간이급수시설의 운영·관리 일체를 관장한다.

②관리자는 간이급수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대장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관리대장 1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취수원의 보호 등) ①관리자는 간이급수시설의 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수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별표1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관리자는 간이급수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 장치를 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수질검사) ①군수는 수도법 제19조 및 제38조의2와 환경부령(상수원관리규칙 제23조의2,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4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에 대하여는 초과항목에 대하여 일주일 간격으로 연속 3회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재검사 결과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한 때에는 제8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제1항에 의한 수질검사결과를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점검) ①관리자는 간이급수시설의 위생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분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②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제1항에 의한 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점검결과 1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개선조치) 관리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시설개선을 위한 조치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유지보수) ①관리자는 수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및 누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 또는 사고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간이급수시설을 우선적으로 개·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규모급수시설의 개·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관리자가 개·보수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간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동시에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군수는 태풍, 홍수,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하여 간이급수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하여 간이급수시설의 긴급복구 및 비상 급수 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의 폐지) ①군수는 수질오염, 시설 미사용 등의 사유로 간이급수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폐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상수도 공급 등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군수가 간이상수도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도지사의 폐지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폐지사유서
2. 사용자, 협의회 동의서(제1항의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
3. 폐지후 급수대책
4. 관리대장

제12조(건강진단) 군수는 수도법 제20조 및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간이급수시설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 3 장 관 리 비 용

제13조(요금징수) ①군수는 간이상수도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간이상수도의 사용자로부터 수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도요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당해 지역의 급수조례에 의한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제14조(관리비용) 군수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간이급수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간이급수시설 사용자가 분담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계량기) ①관리자는 수도요금의 징수, 관리비용의 분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②계량기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 가구에서 부담한다.

제 4 장 사용자 대표 협의회

제16조(설치) 간이급수시설 사용자는 급수시설의 청결유지, 관리비용 분담 등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단위별로 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7조(구성) ①협의회는 간이급수시설 사용자중 5명 내외로 선출하여 구성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다.
②협의회의 대표자는 간이급수시설 사용자중에서 선출한다.
③대표자는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④협의회에서 선출된 대표자는 그의 인적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1. 간이급수시설의 청결 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청소
2. 간이급수시설의 관리비용 산정 및 분담 등에 관한 사항
3. 급수의 제한 및 중단, 수질 이상 발견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사용자들의 의견을 관리자에게 통보
4. 관리자의 조치사항 등을 사용자에게 전달
5. 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19조(개최) ①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 개최한다.
1. 관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2. 사용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3. 협의회의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관할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5 장 보 칙

제20조(실비변상) 군수는 간이상수도 협의회의 대표자에게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예산 범위내에서 성주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교육) 군수는 간이급수시설 협의회 대표자를 대상으로 시설물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은 제7조에 의한 정기점검시에 같이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관리의 위탁) 군수는 간이상수도 유지 및 운영·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협의회의 대표자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폐지) 성주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

간이급수시설관리대장

관리번호	성주군 제 호

구분	항목	내역								
일반현황	위치	경상북도 성주군 읍(면) 리 마을, 부락								
	관리자	성명		전화번호						
	준공년월일			최초사업자						
투자현황	총투자액(만원)	구분	내역	일자	국고보조		지방비		주민부담	기타
					자체사업	현금지원	도비	시군비		
		최초사업비								
		시설계량 1차								
		시설계량 2차								
		시설계량 3차								
		수원이전								
		계								

시설현황						
	수원의종류	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기타				
	시설의유형	① 자연유하식 ② 양수식 ③ 압송식 ④ 가 타				
	취수시설	보유시설	① 집수정 ② 양수모터 ③ 기 타			
		시설내역	구분	제원	시설상태	특기사항
					양호 / 불량	
			집수정 1			심도 m
			집수정 2			심도 m
			양수모터 1			HP
			양수모터 2			취수능력 ㎥/일
	정수시설	보유시설	보유시설	① 소독시설 ② 침전지 ③ 여과지 ④ 배수지 ⑤ 기 타		
		시설내역	구분	제원	시설상태	특기사항
					양호 / 불량	
			소독시설			
			침전지			
			여과지			
			배수지			

송·배수관로	구분	송수관로 (㎜, m)			배수관로 (㎜, m)			관종별 총연장(m)
		관종	직경	연장	관종	직경	연장	
	계							

급수현황				
	계획	급수인구 : 명	급수가구 : 가구	1인당1일급수량 : ℓ
	현재	급수인구 : 명	급수가구 : 가구	1인당1일급수량 : ℓ

수질현황						
	검사시설	취수원	배수지	수도전	검사기관	(개 항목)
	합격여부				검사일시	

개량내역	개량일자	개량시설명	소요액 (백만원)	시공자	개량내용

수원이전						
	이전사유		이전일자		소요일자	만원
	이전위치					

【 별지 제2호 서식 】

간이급수시설 정기점검대장

관 리 번 호	제 호	점검일자 : . . .

조사 및 확인항목		특기사항 및 조치결과		비 고
		특기사항	조치결과	
시설의 청소	소 독 기			
	취 수 원			
	배 수 지			
	침 전 지			
	여 과 지			
	관로파손			
오염원 제거	취 수 원 부 근			
	배 수 지 부 근			

확인자	
점검자	

【 별지 제3호 서식 】

간이급수시설 수시점검대장

관리번호	제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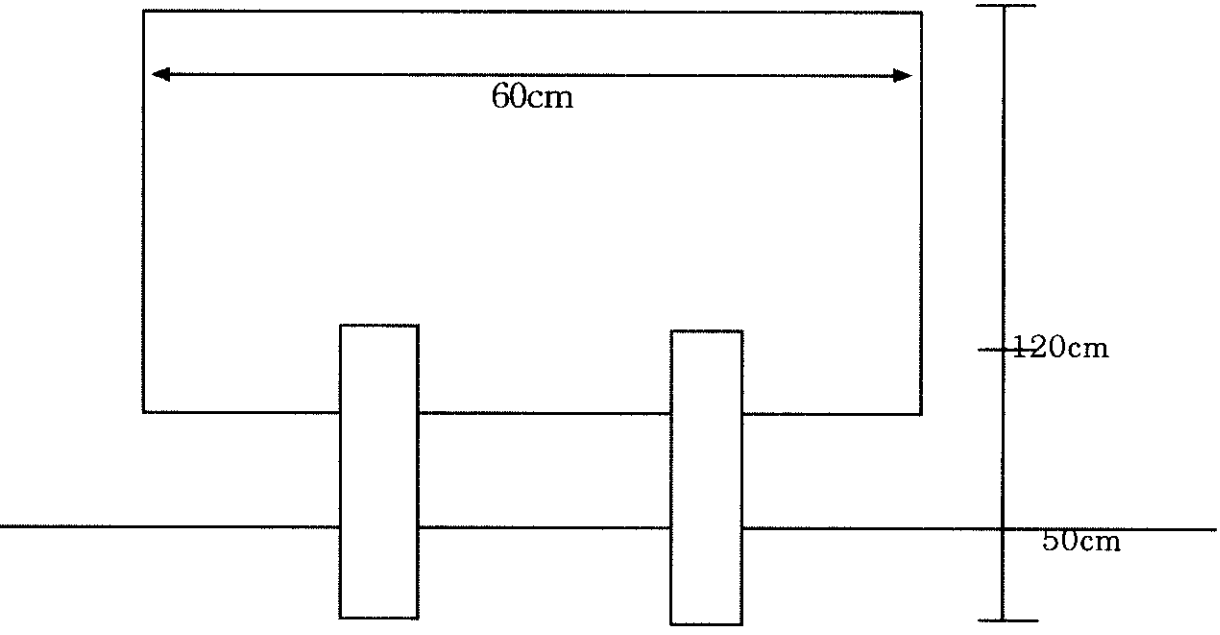
점 검 항 목	점 검 내 용	비 고
1. 소독실시 유무		
2. 수원으로부터 반경 20m 이내에 세균성 오염원 (분뇨, 퇴비,쓰레기장 등)의 유무		
3. 수원으로부터 100m 이내에 유독성물질(공장폐수등)의 유무		
4. 저수탱크의 누수 유무		
5. 저수탱크의 이물질 유입 유무		
6. 외관(냄새, 색·탁도)은 양호 한가?		
7. 기타 조치사항		

확 인 자	
점 검 자	

〔별표 1〕

간이급수시설 안내판

간이급수시설 안내판



재질 및 두께 : 10㎜ 내외의 합판
바 탕 색 : 흰색
글 씨 : 청색

내용문

알 림
1. 이곳은 수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간이급수시설 취수원입니다. 2. 이 곳에서는 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하여 일체의 수질오염 행위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번호 : ○ 위 치 : ○ 시설용량 : ※ 수질오염 및 시설이상 발견시 연락처 : 성주군 환경보호과(930-6183)